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9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 · 공포
(2006.1.11, 2006.7.11) 됨에 따라 원인자 ·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
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서울특별시 교부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 · 보조 또는 용자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함 (안
제4조).
-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안 제5조).

III. 검토의견

1.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령을 시행령이 제정·공포(제정 2006. 1. 11 법률 제7848호, 제정 2006. 7. 11 대통령령 제19608호) 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령 내용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의하였고,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행위라고 법 제6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은 국가에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고 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자치구 또는 군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동법령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총 기반시설부담금 100억원을 배분할 경우에, 국가 귀속분은 30억원이 되고, 서울시 귀속분은 70억원이 되며, 이 가운데 우리구에서 부과대상인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서울시 귀속분인 70억원에 대한 30%인 21억원 이상을 배분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4조의 규정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건축 인·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총 인·허가 건수는 76건이고, 총 부담금은 189억 1,165만 5천 700원(국세 56억 7,349만 6천 710원, 시세 132억 3,815만 8천 990원)으로서 그 가운데 구수입은 39억 7,144만 7천 697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되는 인가 건수 및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3.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5조의 규정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IV. 관련법규 (별첨)

<표 1>

2005년도 건축인·허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내역

(단위 : 원)

구 분	인·허가 건수	부담금 산출	비 고
합 계	76	18,911,655,700	
국 세		5,673,496,710	
시 세		13,238,158,990	
구 세		3,971,447,697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2006. 1. 11 법률 제7848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도로
 - 나. 공원
 - 다. 녹지
 - 라. 수도
 - 마. 하수도
 -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라 함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부과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 7. 11 대통령령 제19608호]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③특별시장·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